

제안심사·통보서

제안자	상주전화국 5급 통신기술 임 그 부	귀하
제안명	전화번호 지정 규정,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	
접수번호	95 - 1065	제안종류 사무 / IDEA
심사부서	영업국·전화영업부	심사결과 불채택 (득점 : 35점)

귀하의 제안에 대한 항목별 및 종합 심사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.

항목별 심사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의성: 아주 낮음 ○ S/W 개발 기술성: - ○ 실시성: 낮음 ○ 경제성: 낮음 ○ 적용성: 전 기관의 10% 미만
종합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화번호 부여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, ○ 전화번호 부여시 종전의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16조 ②항 4호 "그 밖에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화번호" 조항은 공사 승인중대, 대고려서 비스 할상등의 경우 전화국장이 관례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방권을 부여한 것으로써 이를 부화합이 많은 것, 국번이 다른 경우 동일번호 부여, 동일 번호부여 방법을 동일적으로 지정할 경우 업무추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 또한 '95. 4. 21부터 이 조항은 삭제되었음 ○ 따라서 본 제안은 불채택함

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업무발전을 위해 정성껏 제안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계속 연구, 정진하여 더 좋은 제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95. 6. 22

한국통신 대구본부 제안심의위원회 위원장

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20일 이내에 재심청구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심청구하시기 바랍니다.